

 보건복지부		보 도 자 료 6월 14일(화) 국무회의 시작(10:00) 이후			
배 포 일	2022. 6. 13./ (총 2매)		담당부서	기초생활보장과	
기초생활보장과	과 장	민 영 신	전 화	044-202-3051	
	담 당 자	고 석 진		044-202-3056	
자립지원과	과 장	권 병 기	전 화	044-202-3020	
	담 당 자	이 송 열		044-202-3072	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[6.14]

- 자산형성 지원 대상인 청년의 소득·재산기준 규정 등 -

- ☐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6월 1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☐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(2022.6.22.)에 따라 자산형성지원 대상에 추가 되는 ‘청년’을 ‘「청년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기준 중위 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’으로 구체화한다(안 제21조의2).
 -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지 기준을 ‘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외국 체류하고 있는 사람’에서 ‘조사일부터 180일간 역산하여 60일 초과 외국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’으로 강화한다 (안 제2조제2항제2호).
- ☐ 이번 개정안 중, 자산형성지원 대상인 청년을 구체화하는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, 장기 해외체류 수급자 급여 중지 기준 강화 규정은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.

- 보건복지부 광숙영 복지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산형성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을 두텁게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,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규정을 악용하여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부적정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. 앞으로도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규정을 악용하는 수급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<별첨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